

우: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http://www.kma.org>]/전화(02)6350-6536 전송(02)793-8702
의무법제국장 광석철(6573)/ 의무팀장 박일현(6540)/ 팀원 조시형(6536)/ E-mail: kmamedi@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06218호

시행일자 2025. 9. 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개설 운영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5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추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규칙의 모법인 약사법에 근거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의사의 환자 관리 책임이 왜곡되는 문제와 함께 불법적인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빈번해질 것을 우려하여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환자 피해를 막고자 불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개설·운영 및 홍보 안내

나. 신고방식

- 우리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ma.org/board/sub14_0_intro.asp
- 구글 폼 : (의료기관용)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Ibnh6UoYg2IWdKSCpMeGP7zdFaa_gYkf1omxa3RmQqicKhkA/viewform

(환자용)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8lTgsg9jdbrIBF9DX5NpFvEqMfNAxJtbtcoxSiluc1uumw/viewform>

다. 요청사항

-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 신고(의료기관용, 환자용 구분)
- 홍보포스터 배포 및 홍보(각 단체별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참고사항

-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 계획안(붙임 1) 참조
- 추후 홍보자료 추가 배포 예정

- 붙임. 1.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 관련 계획(안) 1부.
2. 홍보포스터(의료기관용, 환자용) 각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
중보건의를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